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일시 | 2021. 11. 1. | 월 | 14:00~16:00

장소 | 국회의정관 3층 | 비대면 화상회의 |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일시 | 2021. 11. 1. | 월 | 14:00~16:00

장소 | 국회의정관 3층 | 비대면 화상회의 |

진행순서

개회사 및 축사 14:00 ~ 14:20

개 회 사	임 익 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축 사	윤 후 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주제발표 및 토론 14:20 ~ 16:00

사 회 자	성 명 재 한국재정학회 회장
발 제 1	김 태 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발 제 2	박 명 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토 론	김 영 진 더불어민주당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 성 겹 국민의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용 혜 인 기본소득당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일시 | 2021. 11. 1. | 월 | 14:00~16:00

장소 | 국회의정관 3층 | 비대면 화상회의

CONTENTS

개 회 사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6

축 사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 8

발 제 1

2021년 세법개정안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5

발 제 2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31

토 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5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51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 61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71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81

개회사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과 김영진 간사님, 류성걸 간사님, 용혜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님, 토론을
맡으신 박훈 교수님과 이영 교수님, 발제를 맡으신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박명호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 동력의 둔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및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추진 등에 따라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아울러 도모할 수 있도록 조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목표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세제개편’
으로 제시하면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 김영진 간사님,
류성걸 간사님, 용혜인 의원님과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축사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윤 후 덕**



안녕하십니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윤후덕 의원입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꺼이 발제를 맡아 주신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과 예산정책처 박명호 추계세제분석실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 주신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과 토론자로 함께 해 주신 김영진 간사님, 류성걸 간사님, 용혜인 의원님, 박훈 교수님, 이영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토론회 준비에 힘써주신 임익상 처장님 이하 국회예산정책처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디지털·저탄소 등 경제구조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한편,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켜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 전문가 여러분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세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부의 재분배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피해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조세의 역할을 고려하며 조세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은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인 세입기반과 납세자 친화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여러 의미 있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세부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국익과 민생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방향을 설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향후 조세소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여러 의견들이 우리 위원회 세법개정안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토론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격려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일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윤 후 덕**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 1

2021년 세법개정안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발제 2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 1

2021년 세법개정안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1년 세법개정안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

CONTENTS

1. 추진경과 및 기본방향
2.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2-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2-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2-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3.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

추진경과 및 기본방향

- 추진경과
- 기본방향

3

기본방향

정책 목표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기본 방향	선도형 경제 전환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추진 전략	자세대 성장동력 확보	상생협력기반 강화	과세기반 정비
	일자리 회복 지원	서민·취약계층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 편의 제고
	내수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과세영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세제실

5

추진경과

코로나19 신속대응

-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2월)
- '20년 고용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2월)

정부정책 뒷받침

- '21년 경제정책방향('20.12월, '21.6월)
- 설 민생안정대책('21. 1월)
- K-반도체 전략('21.5월)
-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 7월)

국민 의견 수렴

-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및 학계
- 세법개정 건의 약 1,300건 검토
- 8개 분야별 세제발전심의회(17회)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반영

- 경제활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포용성 강화 및 과세영평 제고
- 세입기반 정비 및 조세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세제실

4

2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6

2-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일자리 회복 지원
-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7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

- (대상기술 확대)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예) 철강·화학 등 탄소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 시험기술 등
→ 구체적 기술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 (기술평가·심 의 개선) 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존기술 평가 및 신규기술 도입 심의 + 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하여 주기적(3년)으로 존속여부 평가
 - (현행) 개별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여부 심의 → (개정안) 기존 기술평가, 신규기술 건의검토 위한 분야별 전문분과위 운영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

- (수요측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중소·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 → 기본공제(10%(중소)/3%(중견)) + 증가분 추가공제(3%)
 -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 (공급측면)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 적용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 기술이전·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9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지원내용) 현행 2단계 구조를 개편하여 3단계인 국가전략기술 신설 +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를 확대

R&D 비용(%)	대	중견	중소	시설투자(%)	당기분			중소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6	8	16	

- (지원분야)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배터리, 백신 3개 분야 지원

반 도 체	배터리(이차전지)	백 신
•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 ☞ 국내 경제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산업전반 파급효과가 큰 핵심품목	• 저탄소·친환경 경제 전환기 ☞ 전기차 등 미래주요 산업의 핵심구성품으로 경제·산업 주도권 확보 기획	•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 증가 ☞ 타국 의존시 국민생명·건강 위협 초래, 보건위기 후 경제 회복력과 깊은 관련

기획재정부 세제실

8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일자리 회복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일반 창업	생계형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년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년간 50% 감면	5년간 100% 감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을 '1회 50% 초과 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 다수의 피인수법인 주주로부터 주식 등 순차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세제실

10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일자리 회복 지원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

- (고용증대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21~'22년 한시 적용)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구 분	중소기업(3년간)		중견기업(3년간)		대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 외	수도권	수도권 외	수도권	수도권 외
청년·장애인 등	1,100만원	1,200→ 1,300만원	800만원	800→ 900만원	400만원	400→ 500만원
일 반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450만원	-	-

- (경력단절여성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 → 2년 이상**으로 완화
- (정규직 전환 실효성 제고) 일자리 유지,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 제외 + 적용기한 1년 연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11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적용기한 **1년 연장**

※ [참고] '21.上 既 개정사항

- ▶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1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추가 적용 (한도 100만원)
- ▶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적용기한 : '21.6.30.까지 → '21.12.31.까지

기획재정부 세제실

13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일정기간 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에만 세액감면 적용
- 국내 이전·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①**소득·법인세** 및 ②**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관세 감면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 적용**
* 현재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연 적용 중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시 자금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3년 → 1년)**
*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기간

기획재정부 세제실

12

2-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상생협력기반 강화
- 서민·취약계층 지원
- 과세형평 제고

14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상생협력기반 강화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재설계

	현 행	개 정 안
공제 요건	①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②현금성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어음결제비율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 0.2% ▶16~60일 지급 : 0.1%	▶15일 이내 지급 : 0.5% ▶16~30일 지급 : 0.3% ▶31~60일 지급 : 0.15%
공제대상금액	▶상생결제금액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결제 감소분 차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일정기간 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에만 세액감면 적용
- '20.2.1.~'21.6.30.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 + 적용기한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15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서민·취약계층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에 대한 지원]

- (장기펀드 소득공제)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연 납입한도 600만원)
-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가입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50% → 90%(중견 30% → 5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제출주기 단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 → **월별 제출** /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연 1회 → **월별 제출**
- (가산세 부담 완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협력비용 경감**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보다 낮은 **0.25%** 적용, 소규모 사업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 면제**

기획재정부 세제실

17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서민·취약계층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가구 유형	현 행	개 정 안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 정산 →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 정산

[근로자, 중소기업 등 지원]

-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 **2년 연장**
-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19년, '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 허용
* 현재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 허용

기획재정부 세제실

16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과세형평 제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 신설**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금액 × **1%**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매출액의 **70% 이상** → 매출액의 **50% 이상**)
* (요건: ①+②+③) ① 지배주주등이 50%를 초과하여 출자,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해당 기준 조정 시 ①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②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③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제주도 골프장 업황 및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기획재정부 세제실

18

2-3.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과세기반 정비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조세제도 합리화

19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 세목별·납부고지서별로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 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150만원** 미만으로 확대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증금리 추이 등을 고려하여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추진
* (현행) **0.025%**(연9.125%) → (개정안) **0.019 ~ 0.022%**(연6.9 ~ 8%) 범위 내 결정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확대**^①, 직접공급·위탁공급을 착오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라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현행)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 → (개정안)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발급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②,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③
① (현행) 확정신고기한까지 → (개정안) 확정신고기한 후 **1년까지**
② (현행) 수입자가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
(개정안) 위법·부당(가격조작, 자료파기 등), 동일한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허용**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

- 국제무역기, 무역선** 구입물품 반품 시에도 **과세환급 허용**
* (현행)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환급은 시내면세점,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

기획재정부 세제실

21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과세기반 정비

[국제거래를 통한 세 부담 회피 방지]

- (과세대상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 관리 강화)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여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 의무 신설**
-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 관리 강화) ①세 부담을 판정기준 현실화 + ②신택을 이용한 소득이전 방지
① (현행)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세 부담률)이하인 CFC의 유보소득은 그 주주인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으로 과세 → (개정안) 세 부담을 기준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수준으로 상향
② (현행) CFC는 '법인'으로 한정 → (개정안) CFC의 범위에 **법인과세 신택을 포함**
- (해외부동산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의무 부과** (현행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 · 처분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 부과)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
* 과세당국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 국세에 충당

기획재정부 세제실

20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조세제도 합리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7개 조세특례에 대해 **금융투자소득 시행**('23.1.1.~)에 따라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 (배당소득 →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되어도 **특례 유지**
*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시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이 더 적은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선택 허용**

현행 ('22년)	개정안 ('23년~)	
배당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일반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 선택 허용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9% 분리과세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14% 분리과세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포 전면 개정]

-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5년 주기)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관세율포에 반영**
*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된 품목을 반영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통합
- 수출입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무역량이 미미하거나 적용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된 세목**을 **간소화**
* 면역물품(34→21개), 인증표준물질(27→10개), 영화필름(20→2개), 반도체제조기기 등 정보기술협정품목(118→24개)

기획재정부 세제실

22

3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3

감 사 합 니 다.



25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 **세수효과 : 향후 5년간 △1조 5,050억 원**

- 증가 요인 : 특정의국법인 판정기준 현실화,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등
- 감소 요인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 **세부담 귀착**

	서민·중산층	고소득자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합 계
전 체	△3,295	50	△3,086	△8,669	△50	△15,050
국가전략기술	-	-	△2,770	△8,830	-	△11,600
국가전략기술 외	△3,295	50	△316	161	△50	△3,450

기획재정부 세제실

24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 2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Contents	
I. 2022년도 세입전망	
II.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III. 향후 과제	

I

2022년도 세입전망

I-2. 세입여건

명목GDP 변동 대비 국세수입의 변동성은 외환위기 이후 확대
향후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 변화에 직면 예상

국세수입 부양성(buoyance) 추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부문	내용
인구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 고령인구: 15.7%(20년) → 46.5%(70년) · 생산가능인구: 72.1%(20년) → 45.2%(70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가 간 분업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붕괴 각국의 R&D 투자·리쇼어링(본국회귀) 확대
디지털 경제 전환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성장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기반 거래의 확산
친환경 경제 가속화	탄소국경세(EU 등) 대응 및 탄소세 논의 확대 친환경차 확산·화석연료 감소 · 전기차 보급계획**: '20년 13.5만대 → '30년 300만대

* 인구전망(중위 가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보도자료(19.3.28.)
** 정부, '제4차 친환경차 동차 기본계획', 20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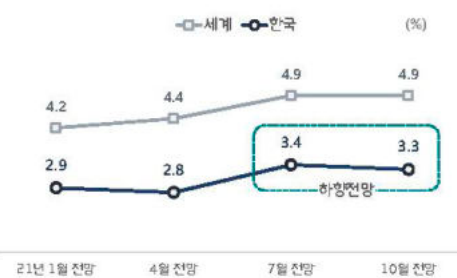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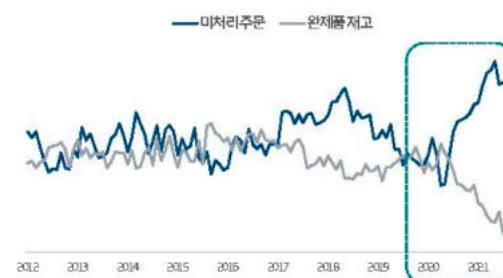
I-1. 대내외 경제여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양호한 회복세 전망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등의 리스크 상존

2022년 실질GDP성장률 전망(IMF)



미국 생산자마치리 주문 및 완제품 재고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4

I-3. 2022년도 국세수입 전망(NABO)

NABO는 2022년 국세수입을 340.9조원으로 전망
경기회복으로 금년 대비 증가, 자산시장 안정화 등으로 증가율은 둔화 예상

국세수입 추이 및 전망(NABO)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6

II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II -1. 2021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특징

정부 세법개정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활성화 촉진, 서민·중소기업 지원, 조세제도 합리화 등에 중점

선도형 경제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투자·고용 지원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한 서민·중소기업 지원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상생결재 세액공제 공제요건 완화 및 공제율 인상 등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및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

- ISA 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비과세 등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8

II -2. 2021년 의원발의 세법개정안: 특징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정부안 대비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개편안

- 탄소세 신설(용혜인의원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세 전환(장혜영의원안)
- 가상자산 과세 유예(윤창현, 노용래, 유경준의원안)
- 청년세 도입(장경태의원안)
- 균형발전(지방소비세율 인상-이해식, 김영진의원안, 지방소득세율 인상-권명호, 이종배의원안)
- 상속세 물납 확대(이광재, 전용기, 박정의원안)

정부안 대비 확대안

-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수준 확대(김경만, 정창민, 추경호, 양정숙, 유경준의원안)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율 인상(구자근, 김경만, 정태호, 정일영의원안)
- 고용지원 세액공제 확대 등(김경만, 추경호의원안)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9

II -3. 2021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세수효과(NABO)

NABO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향후 5년('22~'26년) 간 총 5조 7,880억원 세수감소 전망

정부세법개정안세수효과(NABO): 2022~2026년



주: 1. 기준년도(2021년) 대비 증감액을 누적인 누적법 기준
2. 지방소비세율 인상('22년 23.7%, '23년 이후 25.3%)에 따라, '22년 2.7조원 등
향후 5년('22~'26년) 간 21.1조원이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동급액은 반영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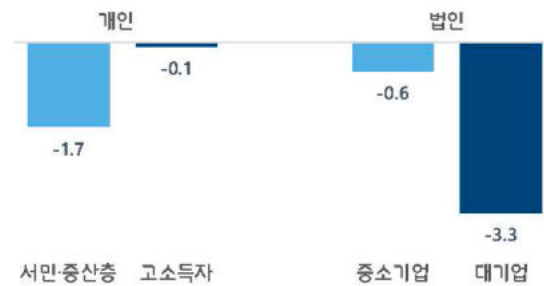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0

II -3. 2021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세수효과(NABO)

서민·중산층 등 개인의 세부담 1.7조원 감소
기업 투자지원 등으로 법인의 세부담 3.9조원 감소 전망

정부세법개정안세수효과(NABO): 2022~2026년
(조원)



주: 기준년도(2021년) 대비 증감액을 누적한 누적법 기준

nab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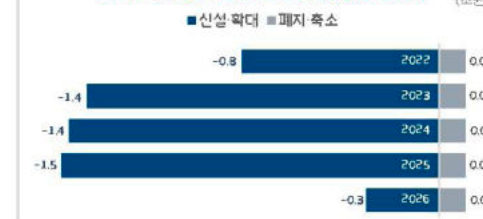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1

II -5. 조세지출 분석: 현황 및 정비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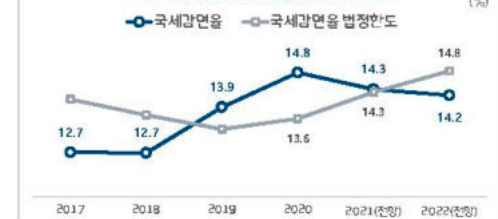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59.5조원(전년 대비 3.6조원 증가) 전망

- 2021년 세법개정안의 조세지출 정비로 향후 5년('22~'26년) 간 5.2조원 세수감소 전망
- 조세지출의 증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대응성 조세지원의 신설·확대에 기인
- 국세감면율은 2022년 법정한도를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정한도 자체의 상승 등에 기인

조세지출정비세수효과전망(NABO)
(조원)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추이
(%)



주: 세수효과는 징수기준, 일몰연장 가정 방식(제도개정 기준선)에 의해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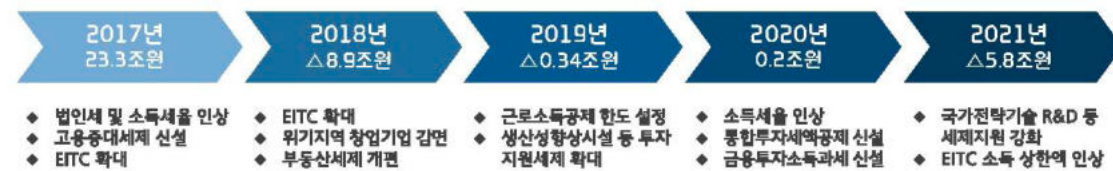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3

II -4. 최근 정부 세법개정안 추이

2021년은 기업 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중점
최근 2년 간의 세수증립적 기초에서 벗어난 세수감소형 개편

2017~2021년세법개정안내용 및 세수효과(NABO)



주: 각 연도의 세수효과는 각 기준년도 대비 증감액을 누적(5년)한 누적법 기준으로 추계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2

II -6. 세목별 주요 개정안 분석: 소득세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 최저임금 상향 등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
- 점감구간을 중심으로 수급 대상 가구(55.3만 가구) 및 수금액('22~'26년, 총 1.3조원) 증가 예상
- 지급대상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당초 취지인 저소득가구 근로유인 제고 효과에 대한 점검도 필요

근로장려세제 개편모형



개정안에 따른 수급가구 수 변화
(만: 가구)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4

II-6. 세목별 주요 개정안 분석: 소득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상장주식 비과세 확대('23년 시행)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기본공제 5천만원, 세율 20%) 도입에 따른 과세 상 불균형 해소
- 국내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비과세 확대 혜택 예상
- 중장기적으로 자산형성 및 저축지원 목적의 유사 조세지출 제도 간 중복 최소화 등의 정비 필요

ISA 가입자수 추이

■ 신탁형 및 일임형 ■ 중·대형(국내 주식투자 가능) 계좌



저축지원 조세지출 주요 항목 현황

항목	20년 실적
비과세종합저축이자·배당소득 비과세	3,386억원
장기저축성보험보통이자·이자소득 비과세	2,878억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2,770억원
우리카주조합원과세특례	710억원
ISA 과세특례	24억원
합계	1조 4,969억원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5

II-6. 세목별 주요 개정안 분석: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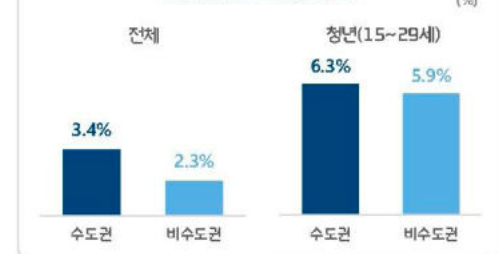
고용중대 세액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고용지표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 확대의 필요성 제기
- 일몰 연장 및 비수도권 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공제액 확대로 향후 5년('22~'26)년 간 5.3조원의 지원 예상
- 수도권의 실업률이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상황을 감안할 때, 비수도권에 한정하여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상시근로자증가인원 1인당 공제액 확대

	수도권	비수도권
청년 등 1인당 공제액	중소: 1,100만원 중견: 800만원 대: 400만원	중소: 1,200 → 1,300만원 중견: 800 → 900만원 대: 400 → 500만원 (*대상: 21~22년 증가한 근로자)
제도 일몰	~2021년 말	~2024년 말

실업률: 2021년 3분기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7

II-6. 세목별 주요 개정안 분석: 법인세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외교적 역량 확대를 위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 한시적 공제를 인상으로 향후 4년('22~'25년) 간 총 4.4조원(R&D 1.9조원, 시설투자 2.5조원) 규모의 지원 예상
- 수소 분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 대상 기술분야 선정에 대한 합리성 제고 필요

정부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분야	부문
R&D (34)	반도체(20) 메모리(2) 시스템(9) 소재·부품·장비(9)
	배터리(9) 상용배터리(4) 차세대 이차전지(1) 소재·부품(4)
	백신(5) 개발·생산(1) 시험(2) 원부자재(2)
시설 투자 (31)	반도체(19) 메모리(2) 시스템(8) 소재·부품·장비(9)
	배터리(9) 상용배터리(4) 차세대 이차전지(1) 소재·부품(4)
	백신(3) 개발·생산(1) 원부자재(2)

주: ()은 대상 기술 수

신기술 검색관련 빅데이터 분석



자료: 국회도서관 Argos 빅데이터 분석(검색기간: 2021.9.1~10.24)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6

II-6. 세목별 주요 개정안 분석: 소비세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적용 연장

-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공제를 및 공제한도 인상 적용
- 손실보상 조치 및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매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인상을 종료
- 향후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정비 논의 시 등 제도도 포함해 검토 필요

우대공제를 적용 시 1인당 추가감면액: 2020년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재정지원 현황

항목	지원시기
세회망자금	20년9월
버팀목자금	21년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	21년3월
희망회복자금	21년9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21년 10월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8

II-6. 세목별 주요 개정안 분석: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기한 연장

- 1993년 제정 후 일곱번째 일몰연장안(현행 세율: 휘발유 529원/l, 경유 375원/l)
- 탄소중립 정책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감안한 중장기적 세제개편 논의 필요

교통·에너지·환경세 자원 배분 비율

	1994년~2006년	2007년~2013년	2014년~2019년	2020년~2021년	2022년~
교통시설특별회계	100	80	80	73	68
환경개선특별회계	-	15	15	25	23
에너지자원특별회계	-	3	-	-	-
균형발전특별회계	-	2	2	2	2
일반회계	-	-	3	-	-
기후대응기금	-	-	-	-	7

주: 기후대응기금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의 7% 전입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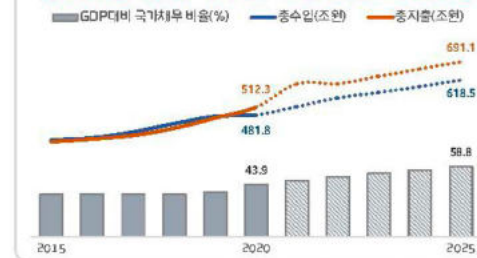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9

III-1. 재정 여건

정부는 2020년 이후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하는 계획 수립
그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경제위기 수준으로 지속될 전망

총수입, 총지출 및 국가채무 현황: 2015~2025년



주: 향후 전망(2021~2025년, 점선 및 빗금 표시)은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참조

관리재정수지 추이: 1990~2025년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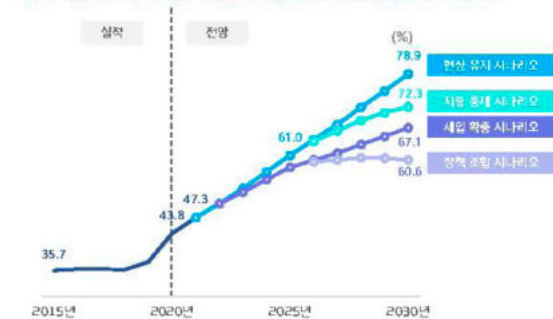
III

향후 과제

III-1. 재정 여건

저성장·인구 구조 변화·복지수요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은 재정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 전망(NABO, 경상GDP대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1.

- 정부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 및 재량지출 증가를 감소세를 감안한다면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78.9%에 도달
- 다만, 2025년 이후 재량지출을 동결하고 조세부담율을 인상할 경우,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60.6% 수준 가능

nab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2

III-2. 향후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및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용 방향 고민 필요**

우선적으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확대된 조세지출의 일몰 계획을 준수하고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지출의 정비 추진
- ▶ 조세지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 및 종합과세 되지 않는 소득 등에 대한
정상과세 방안 모색

중전과 다른 재정여건·과세환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세제개편의 필요성 제기

- ▶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건전재정을 위해 세입기반을 넓힐 수 있는 조세정책이 요구되는 상황
- ▶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조세의 핵심 기능임을 감안할 때,
높아지는 복지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세수확보 방안 논의 필요

naboo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3



국회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감사합니다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1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2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토론문

국회의원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

1. 2021년 세법개정안 기본방향 및 문제점

■ 2021년 세법개정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마련과 투자·소비 촉진, 중소기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함.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내 상장주식 비과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에 의하면,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1조5,050억원임.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전체 세수 감소분의 약 77%인 1조1,600억원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임. 특히 대기업 감세규모(△8,830억원)가 커졌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임.

- 국가전략기술산업이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다보니 대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우위 선점 차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도의 한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함.

■ 정부는 금년 세법 개정안에 코로나19로 심해진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들도 마련돼 있다고 밝힘.

-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상한 금액을 올려(200만원) 지급 대상을 30만 가구 늘리고,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 등 취약계층을 신규 고용(고용증대 세액공제)할 경우 1인당 공제금액 상향(100만원) ▲창업 후 5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대상(연 수입 4,800만

원 이하 → 8,000만원 이하)을 늘리고 ▲착한 임대인 제도(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70%를 세액 공제)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대상(폐업 소상공인까지 포함)도 확대함.

- 또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기금(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확대(50% → 90%) 등도 세법개정안에 담겨 있음.
- 2021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양극화 해소와 서민, 소상공인, 청년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성격의 개편안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 매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그때마다 드는 아쉬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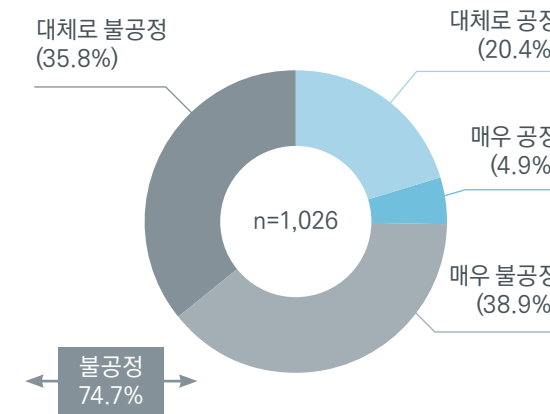
-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때마다 이것저것 바꾸고 세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참 많은데 정작 세법 전반 큰 틀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그때그때 겹가지만 손을 대는 임기응변식, 조각조각 땀질식 세법 개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임.
- 금년만 해도 소득세나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제, 상속세 등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에 대한 부분은 정작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는데, 매년 국민이 공감할만한 세법 개정안은 안 보이고, 국민을 향한 설득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2. 문재인 정부 4년, 세법 개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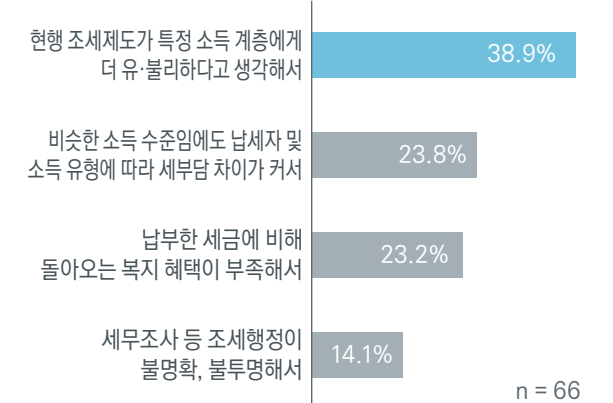
■ 문재인 정부 4년동안 세법 개정의 특징은 과표구간 쪼개기와 최고세율 인상,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의 징벌적 과세로 특징지을 수 있음.

- 요약해 평가하자면 ▲사실상의 증세 ▲불공정(징벌적 과세, 국민 편가르기)과 모순 ▲국민이 이해하기도 힘든 누더기, 모자이크식의 난해한 세제라고 할 수 있겠음.
- 지금 국민들은 현재의 조세제도를 그다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함.
국민 10명 중 7명(74.7%)은 현행 조세제도를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음.

〈 조세 제도 공정성 인식 〉



〈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자료 : 2021. 4. 21. 한국경제연구원 발표, 모노리서치

■ 조세정책이 공정했는지와는 별개로 조세원칙에 관한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 ‘아담 스미스’는 ▲공평의 원칙 ▲명확성 원칙 ▲편리성 원칙 ▲최소징세비의 원칙을 바람직한 조세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런 원칙을 토대로 현대에 들어 바람직한 조세원칙은 ▲조세부담의 공평성 ▲경제적 효율성(중립성)·단순성 ▲확실성이라는 3원칙으로 집약할 수 있음.
- 즉 조세부담이 얼마나 공평하게 분배되는지, 중립적으로 설계됐는지, 또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간편하고 단순한지가 핵심임.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이 이 조세의 대원칙에 부합했는지, 또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임.

3. 조세체계의 복잡성 심화, 효율성은 악화

■ 세제개편과 관련, 현재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기조는 제도 단순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임. 그런데 우리는 그 추세에 역행해 과표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도를 심화시켜 조세체계의 복잡성만 심화시키고 효율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개정된 소득세와 법인세가 그러함.

- 소득세의 경우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단계였던 과표구간이 8단계까지 늘었고, 최고세율도 40%에서 45%까지 인상됨.

[표]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변화

2014 (5단계)	2017 (6단계)	2018 ~ 2020 (7단계)	2021 ~ (8단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4,600 " 15	4,600 " 15	4,600 " 15	4,600 " 15
8,800 " 24	8,800 " 24	8,800 " 24	8,800 " 24
1억5천만원 " 35	1억5천만원 " 35	1억5천만원 " 35	1억5천만원 " 35
1억5천만원 초과 38	5억원 " 이하 38	3억원 " 38	3억원 " 38
	5억원 초과 40	5억원 " 40	5억원 " 40
		5억원 초과 42	10억원 " 42
			10억원 초과 45

*자료 : 기획재정부

- 법인세 역시 2017년 세법개정으로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25% 세율이 신설되어 현재 과표구간이 4단계로 늘었음.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구간을 쪼개고 최고세율은 인상됨.

[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변화

(단위 : %)

과표구간	'00~'02	'03~'05	'06~'08	'09	'10	'11~'12	'13~'18	'19~
~1억원	16	15	13	11	11	10	10	10
1 ~ 2억원	28	27	25					
2 ~ 200억원				22	22			
200 ~ 3,000억원				22	25			
3,000억원초과								

* 자료 : 기획재정부

[표] OECD 주요국 법인세 최고구간의 세율(지방세 포함) 추이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독일	29.6	29.6	29.7	29.8	29.8	29.9	29.9	29.9	29.9	29.9
일본	39.5	37.0	37.0	32.1	30.0	30.0	29.7	29.7	29.7	29.7
프랑스	36.1	38.0	38.0	38.0	34.4	44.4	34.4	34.4	32.0	28.4
이탈리아	31.3	31.3	31.3	31.3	31.3	27.8	27.8	27.8	27.8	27.8
한국	24.2	24.2	24.2	24.2	24.2	24.2	27.5	27.5	27.5	27.5
캐나다	26.1	26.2	26.2	26.7	26.7	26.7	26.8	26.6	26.2	26.2
미국	39.1	39.0	39.1	39.0	38.9	38.9	25.8	25.9	25.8	25.8
영국	24.0	23.0	21.0	20.0	20.0	19.0	19.0	19.0	19.0	19.0
G7 평균	32.2	32.0	31.8	31.0	30.2	31.0	27.6	27.6	27.2	26.7
OECD 평균	25.2	25.3	25.2	25.1	24.8	24.6	24.0	23.7	23.1	22.9

*주 : 1. 연방국가의 경우 주별 지방세율의 가중평가 값임

2. 2021년 미확정국(미국, 일본)은 2020년 수치 인용

자료 : OECD Tax Database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은 늘었지만 저임금 근로자나 중산층 근로자들이 주로 적용을 받는 과표구간과 세율은 2010년 이후 11년째 그대로임. 표면적으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린 사실상의 증세가 돼버렸다는 지적이 많음.

- 법인세의 경우, 세계적 추세에 반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하는 시기에 인상이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쳐 투자와 고용, 가계소득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동안의 세계적 우위도 상실해 버리는 가장 열등한 선택을 했다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음.

■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세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여러 차례 세법이 바뀜.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법률과 시행령을 모두 합쳐 6번,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두 9번이나 개정됨.

- 특히 양도세 관련 규정은 거의 매년 개정되다시피 해 법적 안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양도세 계산은 복잡해져 그야말로 납세자와 시장은 혼란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세무사도 포기하는 이른바‘양포세’가 되어 버림.

- OECD에서는 “부동산세를 가격 통제 또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음.(OECD Revenue statistics 2007, Tax Recommendation).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동산세제라는 수단을 활용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상승만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함.

4.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 노력, 세제 전반 개편 논의

■ 정부는 2022년 604.4조원(전년대비 8.3% ↑)이라는 사상최대 예산안을 편성함. 내년 총 수입은 2021년 본예산(482.6조원) 대비 66.2조원(13.7% ↑) 증가한 548.8조원임.

- 문재인 정부 이후인 2019년부터 적자재정(통합재정수지 기준)이 계속되고 있고, 2025년까지 총 지출이 총수입을 넘는 적자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건전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짐.

[표] 2021~2025년 중기 재정총량 전망

(조원, %)	'21		'22	'23	'24	'25
	본예산	2차추경				
• 총지출	558.0	604.9	604.4	634.7	663.2	691.1
(증가율)	(8.9)	(18.1)	(8.3)	(5.0)	(4.5)	(4.2)
• 총수입	482.6	514.6	548.8	570.2	593.9	618.5
– 국세수입	282.7	314.3	338.6	352.9	367.7	383.1
• 통합수지	△75.4	△90.3	△55.6	△64.5	△69.4	△72.6
(GDP대비)	(△3.7)	(△4.4)	(△2.6)	(△2.9)	(△3.0)	(△3.0)
• 국가채무	956.0	965.3	1,068.3	1,175.4	1,291.5	1,408.5
(GDP대비)	(47.3)	(47.3)	(50.2)	(53.1)	(56.1)	(58.8)

*자료 : 기획재정부

■ 2021년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 20%(20.2%)를 넘어섰고, 조세지출의 확대로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2019~2021년) 법정한도를 웃돌 전망임.

*기재부는 금년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2021년 국세감면율을 14.3%로 제출(실제로는 14.39%)하였으나, 법정한도 이내로 맞추기 위해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버림해 계산.(예산정책처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2021. 10. 25. 언론보도 등)

[표] 연도별 국세감면율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전망)
국세감면액	37.4	39.7	44.0	49.6	52.9	55.9
국세감면율	13.0	12.6	12.7	13.9	14.8	14.39
국세감면한도*	14.4	14.0	13.6	13.3	13.6	14.3

* 국세감면한도(국가재정법§88) : 직전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주 : 2018년 이전 국세감면율과 감면한도는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88조를 반영하여 재계산한 결과

*자료 : 기획재정부

- 해마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애초 예정대로 종료되는 비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음.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총 86개 항목 중 종료되는 항목은 9개에 불과해 근본적인 세수 확보방안은 거의 보이지 않음.

■ 매번 빚나가는 정부의 고질적 세수추계 오차도 문제임.

당초 정부가 전망한 2021년 국세수입 예산은 282.7조원(본예산 기준)이었지만, 금년 세수호황과 전년도 납부유예분 반영으로 정부는 31.5조원을 증액한 314.3조원(2차추경 기준)이 되어 국세수입이 이대로라면 세수 추계 오차율이 무려 11.1%나 차이가 나게 됨. 이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첫 두자릿 수 오차율임.

- 재정당국의 잘못된 세수 추계는 소모적 추경 편성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며, 재정운용을 경직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세수확충 방안의 한가지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자 납부제도를 제안함.

- 2021년 6월 기준 정리중 국세 체납액은 9조9,406억원으로 이 중 절반에 달하는(48.5%)인 4조8,164억원이 부가가치세 체납임.

[표] 세목별 정리중 국세 체납액 현황

(억원)

연도	계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부가 가치세	기타
2016	70,002	18,575	4,872	4,517	29,460	12,578
2017	81,060	22,853	6,373	4,418	33,309	14,107
2018	91,394	26,193	6,960	4,707	38,748	14,786
2019	92,844	26,715	7,399	3,148	41,140	14,442
2020	95,284	25,656	7,679	3,855	44,781	13,313
2021.6	99,406	25,452	9,613	3,877	48,164	12,300

*자료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이유는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제도가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자(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와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공급자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체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임.

-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사업자를 대신해 최종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하면 체납 방지와 징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국세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19대 국회 ‘부가가치세법’대표발의(류성걸 의원)

-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응당 내어야 할 세금이고,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 된 지금은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언젠가는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더 나아가서는 세제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인 상황과 국민적 요구가 많이 변화한 만큼 현재 상황에 맞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관한 논의의 시작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임.

- 끝으로 한달여 남은 정기국회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간 심도있게 심사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씀을 드림.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3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토론문

국회의원 **용 해 인**
 기본소득당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조세지출 근본적 정비하고 세제와 국정운영 엮박자 시정 필요
 R&D 지원이 기업 퍼주기 논란 벗을 방안 고민해야

1. 들어가는 말

- 개별 세법 개정의 기능적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세제를 재정 정책, 산업 정책, 복지 정책 등 제반 사회 경제정책의 필수 구성요소로 보며 나아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및 국가의 경제 모델과 연계시켜 파악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
- 통합적 접근법에 따를 경우 개별 세법 개정안이 상당한 내적 합리성을 갖췄음에도 추구하는 사회상과 경제상에 비춰 비판적인 평가가 가능함
- 이런 시각에서 2021년 정부 세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고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3가지 주요 평가

1) 비과세·감면 대폭 확대, 바람직한 미래인가?

■ 조세지출의 큰폭 확대

- 최근 2년 세법개정안의 조세지출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유지강화			폐지·축소	합	유지강화 비중	세수효과
	단순 연장	확대	신설				
2020년	35	15	13	36	99	63.6%	△400
2021년	67	32	7	15	121	87.6%	△71,662

주1.세수효과는 정부 추계, 5년간 누적법 기준

자료: 용혜인 의원실(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구성)

- 전체적으로 2021년에 조세지출이 대폭 강화됐고, 그 결과 정부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기준 7.2조원 세수 감소를 전망
-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조세지출 대폭 확대의 근거로 제시
- 2020년에는 단순연장, 확대, 신설 3개 항목의 비중이 64%였으나 2021년에는 88%임

- 국세감면 현황 및 전망

구분	20년(실적)	21년(전망)	22년(전망)	증가율(%) (‘20-’21년)
국세감면액(조원)	52.9	55.9	59.5	12.5
국세수입총액(조원)	303.6	332.7	358.8	18.2
국세감면율(%)	14.8	14.3	14.2	
국세감면 법정한도(%)	13.6	14.3	14.8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증가율은 자체 계산 추가)

■ 비대한 비과세·감면제도 골격 유지한 채 ‘숫자 맞추기’현상 관리

- 최근 세법개정안의 조세지출 대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세감면 법정한도는 준수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이는 국세수입 증가 효과로 보임.
- 정부는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한 제도는 정비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실제로 그러한지는 의문임
- 일례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상의 비과세·감면제도 운용 방향에서 i)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ii)노후자 동차 교체에 의한 개별소비세 감면, iii)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3가지를 최근 폐지 내지 정비한 비과세·감면제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i)만 종료됐고, ii)는 종료 예고 이후 다시 연장 시행 중이며, iii)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형태를 바꿔 ‘기본공제’만 없애고 기타소득과 금융투자소득 중 택1 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는 유지시킴

■ 비과세·감면 축소를 위한 근본적 접근 필요

- 예정처는 코로나19로 약화된 재정건성 회복과 지속가능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일정한 우려 표명
- 현재 ‘조세지출’로 관리되는 조세특례 항목들조차 상당히 축소된 상태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 조세지출 요건을 충족함에도 조세지출로 관리되지 않는 특례가 다수 존재함. 중부세 합산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들이 특히 그러함.
- 확장적 재정지출 공언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의 확대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의 조세지출 운영 기조는 재정지출, 특히 복지지출의 증가를 세수나 복지 수요의 ‘자연 증가분’에 한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음
- 특정 비과세·감면의 당부(當否)를 기능적 합리성에 국한해 평가하는 대신 우리나라 세제의 큰 특징 중 하나인 비대한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낮은 부담률과 낮은 재분배 효과, 복지재정지출의 제약 등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국정운영 기조에 충실한 세법 개정인가

■ 세법 개정 내부의 탄소중립 기조와 화석연료 지원의 충돌

- ‘탄소중립’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한 세법 개정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 기술을 추가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화석연료 감면은 적용기한 모두 연장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소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평가: 인센티브만 있고 패널티는 없는 개편

-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는 '탄소세'는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안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세제 혜택만 있고 패널티 피구세 도입은 전혀 없음. 에너지 세제 관련 탄소중립보다 산업 이해에 더 치우친 것으로 평가함.
- 수소제조 명분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개소세 면제는 탄소중립 명분보다 수소자동차 제조업 지원 성격이 강해 보임
- 화석연료 세금 감면 특례의 연장에 대해 취약계층 지원 명분을 내세우나 탄소중립 기조와 충돌한다면 지원을 화석연료에 대한 감면 형식 대신 다른 형태의 보조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보호 정당성 의문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이 과연 취약계층인 임차인 보호 효과 있는지 의문이며, 지금까지 세액공제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임차인 보호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중손실(dead weight)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정책 결정에 이를 감안했는지 의문이며, 사중손실이 크다면 임대인 세제 지원보다 공실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주식·공모주식형 펀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지난해 통과된 금융투자소득에서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 대해 기본공제를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ISA에 대해서도 운용재산의 확대, 주식 양도차손 공제 허용, 적용기한 폐지, 의무보유기관 완화 등 대대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됨
- 정부는 이번 개정이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편'이라고 하나, ISA에서 주식과 공모펀드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 제도 설계에 따른 당연한 개편이 아니라 정책 결정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보임
- 이번 개정은 <II.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 <2.서민·취약계층 지원> - <(2) 근로자·자영업자 지원>의 한 항목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가처분소득 여유분으로 주식과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계층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며, 근로자·자영업자 내에서도 소득 상위계층에 속할 것이라는 점에서 취약계층 지원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전체적으로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을 우대하는 조세중립성 훼손, 상대적 부유층에 감세하는 조세형평성 훼손을 지적할 수 있음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 새로운 분리과세 제도 도입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금융소득 분리과세 폐지·축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요구에 역행
- 1인당 매입금액 연 5천만원, 총 2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라도 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취약계층보다는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상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3) R&D 지원이 '기업 퍼주기' 되지 않으려면

- 정부안과 예정처의 분석

- 정부안의 내용: 현행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제 지원 방식을 일반·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해 3단계 구조로 전환하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적용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비율을 10%p,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3~4%p 상향함
- 예정처 평가: 이번 세법 개정안을 최근 수년간 세제의 누진도 강화 방향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 세수감소형 세제 개편으로의 전환으로 보며, 세부담 귀착효과에서도 고소득자와 대기업 수혜가 두드러진 것으로 (간접적으로) 분석함.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의 이러한 효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기업 R&D 지원을 대폭 강화한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분석함

- R&D 지원 강화 세제 개편의 합리성과 제기되는 문제

- 반도체 산업 등에서 글로벌 경쟁이 유례없이 격화되고 이에 따라 핵심 기술 및 소재·부품 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적 정당성이 존재하며, 이번 세법 개정이 이것의 일환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세법 개정의 기능적 합리성에만 국한해서 평가한다면 세부담 감소, 세부담 귀착 효과에서 역진성은 다소간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음
- 오히려 문제의식의 중심을 기업 R&D 지원의 산업정책적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대기업 퍼주기', 세수감소, 역진적 재분배 등 사회경제적 역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두어야 할 것임

■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화와 그 부작용

• 국부에서 지식재산생산물의 위상 강화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고정자산	4,272.2	5,359.4	7,053.6	5.1%
건설자산	3,412.1	4,221.7	5,522.4	4.9%
설비자산	606.0	760.8	966.6	4.8%
지식재산생산물	254.1	376.9	564.6	8.3%
- 연구개발(R&D)	163.2	262.8	396.6	9.3%
- 기타지식재산생산물	90.9	114.1	168.0	6.3%
지식재산생산물/고정자산	5.9%	7.0%	8.0%	

자료: 용혜인 의원실(원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대차대조표)

-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는 R&D, 소프트웨어 같은 지식재산생산물이 생산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증가율로도 건설자산과 설비자산과 같은 전통적인 고정자산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을 보임
- 현재 한국은행 국민계정은 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체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8 SNA에서는 소프트웨어, DB, R& 등 협의의 무형자산만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디자인, 브랜드, 인적자본, 조직자본 등은 무형자산이 아닌 비용 처리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광의의 무형자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식재산생산물의 자산가치는 현재보다 약 2배 정도 될 것으로 보고함

• 지식기반경제의 그늘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무형경제(Intangible Economy)의 부상: 무형자산의 역할 및 시사점>(2020년 4월 3일)에서 발췌
 - * “디지털 경제 하에서 기업의 무형투자 확대는 네트워크 효과와 결합하여 수확체증 생산구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연독점 구조의 대형 슈퍼스타 기업이 등장할 개연성이 증가”함
 - *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로 인한 고용 양극화, 근로자간 임금 격차 확대 등으로 소득 불평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술 발전과 무형경제 전환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배경에도 디지털 전환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이 주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더이상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일자리 증가, 가계소득의 증대 등 국민경제에 선순환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제시대적 환경이 주요한 경제적 배경이었음

■ 기업 R&D 지원과 공공성 연계시켜야

• R&D 지원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재정지출	18.9	19.0	19.4	19.8	20.6	23.9	-
조세지출	3.3	2.5	3.0	2.8	2.6	3.0	3.9
합계	22.1	21.5	22.3	22.6	23.3	26.9	-

주1. 재정지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보고서에서, 조세지출은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자료

주2. 2020년까지는 실적치이며 조세지출 2022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용혜인 의원실(정부 부처 자료 취합)

- 정부의 기업에 대한 R&D 지원 방식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감면을 통한 조세지출로 구분할 수 있음
- 주로 중소기업 대상 재정지출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증가했고, 조세지출은 2015년 이후 한동안 감소했으나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증가세 전환이 확인해짐
- 정부의 R&D 지원은 2020년 기준 GDP의 1.4%로,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

• R&D 지원을 공공 지분화하는 방안 고민해야

- 노르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현재 노르웨이연금펀드(GPF-Norway), 글로벌연금펀드(GPF-Global), 국영기업(SOES) 3가지 형태의 사회적 자산을 운영함
- 노르웨이 중앙정부는 2016년 국가 GDP의 271%에 해당하는 자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오슬로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의 1/3 이상을 소유하고 운영함
- 사회적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복지국가 노르웨이의 든든한财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R&D 지원을 공공 지분화하는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음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4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경쟁력 있고 원칙 있는 세제개편을 위한 논의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 5년 임기 대통령제하의 현정부 사실상 마지막 세법개정
- 코로나19(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하에서 세법개정(2020년에 이어)
- 일부 감세효과를 가져온 개편

(참고사항) 국회 예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 분석, p.11

- (2017)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큰 세수확대형
- (2018)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큰 세수감소형
- (2019) 소득계층별·기업규모별 세부담 귀착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음
- (2020)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확대 및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
- (2021)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세수감소형

구체적 논의

1. 선진적인 세제개편이 되기 위한 고민의 필요

- K세제는 어떠한 모습인가? 종전 선진 여러 나라의 좋은 세제를 선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도 G20국가, OECD 가입국이라는 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가져오는 경우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 OECD 평균, G7 국가 및 G20국가 평균에 가깝게 가는 것이 선진적인가?

[참고자료]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 1961. 9. 30 설립, 우리나라는 1996년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회원국 38개국(2021년 현재, 중국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21년 우리나라 Part I(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예산 부담률은 3.5%로 회원국 중 7위 수준
- G20(Group of 20) : 기존의 G7 참가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과 각 대륙의 신흥국 및 주요국 12개국(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EU 의장국을 포함해 총 20개국.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 시작(2008.10, 2008년 워싱턴 G20 정상회의의 첫회의). 국별도의 사무국이 없으며, 의장국이 임기(1년)동안 사무국 역할

- (OECD 평균과 G7 평균 수준 고려시) 국민부담률 27.3%를 올릴 것인가?

[참고자료]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조세/GDP) (사회보장기여금/GDP)
- (2019년) 우리나라 27.3% (OECD평균보다 6.5%p 낮음, G7평균보다 8.4%p 낮음); OECD평균 33.8%, G7평균 35.7%

- (OECD 평균과 G7 평균 수준 고려시) 조세부담률 20.0%를 올릴 것인가?

[참고자료]

- 조세부담률(%) = 총조세 (국세+지방세)/ 명목GDP × 100
- (2019년) 우리나라 20.0% (OECD평균보다 4.9%p 낮음, G7평균보다 5.2%p 낮음); OECD평균 24.9%, G7평균 25.2%

- (OECD 평균 고려시) 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리고 법인세와 재산세는 내릴 것인가? 부가가치세 세율 올리거나 법인세 세율 인하 여부에 대한 논의는 큰 세제개편의 내용임. OECD의 세수 비중 의미에 대해 위 쟁점 찬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임. 실효세율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귀 기울일 필요 있음.

[참고자료]

-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대비 소득세·소비세 비율이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율은 높음.

[표] 명목 GDP 대비 세수 비중(2019년 기준)

단위 : %

	한국	OECD 평균	G7 평균
소득세	4.8	8.3	9.8
법인세	4.3	3.0	2.5
소비세	7.1	10.8	9.1
재산세	3.1	1.9	3.0

주: 1. 소득세, 법인세 OECD 평균 계산시, 2019년 자료 미제출국(호주, 그리스)은 2018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2. 소비세제, 재산세제 OECD 평균 계산시, 2019년 자료 미제출국(호주, 멕시코)은 2018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2021 조세수첩, p.8

2. 세수추계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줄어나갈 것인가?

- 2021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2~2026년 합계 5조 7,880억원의 세수가 감소(누적법에 따른 경우; 이에 반해 순액법에 따르면 2,950억 감소할 것으로 전망(국회예산정책처 추계))
- * 누적법은 2021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이며, 순액법은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함
-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5년 합계 △5조 7,880억원)는 정부 추정치(5년 합계 △7조 1,662억원)에 비해 세수감소 규모를 1조 3,782억원 낮게 전망. 세수추계의 차이가 추계시기의 차이,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 결과 고려 여부, 일몰연장 가능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 세수추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으나, 그 규모나 차이의 이유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질 수 있음. 국외적인 요인, 국내적인 요인,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경우 추계를 다시 하여 바로잡는 절차 마련 필요) 등 여러 상황에 대해 대비 필요

3. 세제에 대해 재원조달 목적이외에 정책적 목적을 허용할 때 그 방향은 무엇인가?

-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는 하나, 조세지출이 되어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후적인 검토 필수적(비과세 및 감면의 기득권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일몰연장).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나, 어떠한 부분을 줄이고 지원을 늘릴지 각론은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
- 기업에 대한 지원과 기업주에 대한 지원은 구별될 필요가 있음. 정경유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가경제를 위한 기업지원이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특이나 탄탄한 지원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함.
 - (정부안)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의원안) 반도체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 공제 강화 등이 이와 관련되어 있음
- 세금은 소득 및 자산격차 해소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나?
 - (정부안)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의원안)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간 연장, 청년세 신설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등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국 바이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바는?
 - 바이든 정부의 세제개편안(2021년 3월에 공개된 The American Jobs Plan, 2021년 4월에 공개된 The American Families Plan 등)의 주요 내용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인 'TCJA'(The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서 인하한 법인·개인 소득세율의 인상, 고소득 자본소득세 세율을 통상이익과 유사한 부담을 가지도록 일반세율 적용 등 자본소득세 과세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 도입 등
 - 트럼프 정부의 경우 과세수준을 낮추어 민간의 투자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쪽, 바이든 정부의 경우 재정정책을 통해 미국 내 저소득층 지원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소득자·대규모 법인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정부세수를 늘리고 재원을 마련

[표] 미국 트럼프정부와 바이든정부의 세제개편 비교

구분		TCJA 이전	TCJA	바이든 정부 세제(안)		
개 인	소득세율	10~39.6%	10~37%	10~39.6%		
	소득세율 누진구간 (단독가구 최고세율 개시구간)	USD 426,700	USD 500,000	USD 452,700		
	고소득 자본소득세율	자본소득세율: 최대 20%(+3.8%)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 (현재 37%)+3.8%		
		일반세율 구간 연계	과세구간 별도 부여			
	고액 상속·증여 자본소득세	-		증여·상속시점 과세		
법 인	법인세율	15~(39)35%의 누진세율	21%의 단일세율	28%의 단일세율		
	대기업 최저한세	-		회계이익의 15%		
국 제	GILTI	실효세율 (공제)	-	GILTI 도입	10.5~13.125%의 실효세율	21%의 최저실효세율
					국외자산의 10% 소득면제	국외자산의 10% 소득면제 폐지
					전 세계 통산	국가별통산
	FDII(공제)		-	FDII 도입	FDII 폐지	
	BEAT(비용부인)		-	BEAT 도입	BEAT 폐지하고 SHIELD로 대체	

출처 : 정훈, "바이든 정부 세제개편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예산춘추 63호, 국회 예산정책처, 2021.8, p.48

* GILTI(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 미국의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과세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내용.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 소득 가운데 '무형자산 발생 부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즉각 과세

* FDII(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 미국 내 기업의 수출소득에 대해서도 '무형자산 발생 부분 (FDII : 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을 추려내 높은 공제율을 적용

* BEAT(Base Erosion Anti-Abuse Tax) : 해외 관계사에 지불되는 비용에 제한을 두어 미국의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해외관계사에 지불하는 미국 회사들에게 적용

* SHIELD(Stopping Harmful Inversion and Ending Low-Tax Developments) : 저세율국가에 있는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을 세무상 불공제하는 규정. 기존 BEAT 규정보다 적용대상기업과 적용대상비용이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회사 및 다른 관계회사와 거래가 많은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바이든 정부 및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의 공통점은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목표는 같음. 방법이 다름. 우리나라도 목표는 같지만 방법을 달리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재원조달 목적의 세제로서 충분한 고려가 있는가?

- 국가부채 및 재정지출확대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
 - 적절한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그러나 국가부채의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음
 - 지속가능한 적정한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1회성의 것과 지속적으로 지출될 것을 구별해서 대비가 필요
 - 5년차 세제개편의 한계인가? 정권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주도의 세제개편하에서 임기말에 나타나는 현상 일 수 있음.
 - 증세는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개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 국회의 노력이 필요
- 코로나19가 예측하지 못한 하나의 사건으로 그칠 것인지,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코로나 19이전 단계로 회복되는 시간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재정적인 준비 점검 필요

5. 부동산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현 정부는 부동산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한 바 있음. 잦은 세제개편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고, 부동산시장의 특성, 전세계적인 여러 현상 등과 맞물려 결국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필요할 수 있음
- 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종전 다주택자에 대한 집중적인 중과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논란, 1세대1주택자에 대해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이 있었음. 종전 부동산세제 개편이 불로소득에 대해 아직도 약하다는 입장, 너무 강화되었다는 입장 등이 첨예하게 존재.
- 부동산시장의 향방에 대해서는 쉬 어렵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세제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적어도 부동산을 통한 이익은 지속적으로 세금등으로 헌법상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동산에 대한 다른 재산과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좀더 세금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음
- 보유세 강화,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 등에 대해 찬반, 세부적으로 대주택, 1주택, 저가의 다주택, 고가의 1주택, 실거주 1주택, 실거주 아닌 1주택, 주택이외의 상가 등에 대해 일관된 세제의 방향을 갖고 추진하는 것 필요. 부동산시장이외에 금융 등 경제 전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있음

- 정부안의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등 비과세-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전환을 고려하여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의 경우도 부동산 이외의 다른 투자 자산으로 여유자금이 분산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음. 다만 소득 있는데 과세안되는 것에 대한 공평과세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기도 함.

6. 국제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 최근 디지털세 논의 경과
 -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즉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가 화두.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는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 2015년 10월 OECD는 15개 실행방안(Action Plan)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 (’18.12) 필라 1·2의 개념 첫 확정(OECD IF)
 - (’20.10) 제10차 IF 총회, 필라 1·2 중간보고서(Blueprint) 발표
 - (’21.7) 제12차 IF 총회, 필라 1·2 중간 합의안 발표
 - (’21.10) 제13차 IF 총회, 필라 1·2 최종 합의문 발표
 - (2020.10) 2020년 10월 12일 OECD는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국가별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Pillar 1, 2 Blueprint를 공개
 - <http://www.oecd.org/tax/beps/international-community-renews-commitment-to-address-tax-challenges-from-digitalisation-of-the-economy.htm>
 - (2021.6) 2021년 6월 4~5일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시 합의안
 - [Pillar 1]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액과 이익률 기준 상위 다국적기업(the largest and most profitable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초과이익(=글로벌 매출액의 10%를 상회하는 이익)에 대해 20% 이상 과세할 권리(Amount A)를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배분
 - [Pillar 2]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함
 - (2021.7) 2021년 7월 1일 OECD/G20 IF 제12차 총회에서 130개국 이 합의
 - [Pillar 1] 적용대상기업, 과세연계점, 배분량, 매출귀속 기준, 사업구분, 조세확실성, 일방주의적 조치, 이행 계획의 구체화 등
 - [Pillar 2] 기본 체계, 적용대상기업, Pillar 2의 지위, 이행, GloBE 규칙(소득산입규칙과 비용공제부인규칙), 원천지국과세규칙, 실효세율 계산,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 단순화 등
 - (당시 예상된 사항) 최저한세율 확정 문제가 남아 있음.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력한 주도로 디지털세 논의가 이루어짐

(2021.8) 2021년 10월 8일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영상)를 개최하여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 공개

* G20 재무장관회의(10.13, 워싱턴 D.C.)에 보고

* G20 정상회의(10.30~31, 로마)에서 추진(예정)

• 2021년 10월 디지털세 합의안 도출을 우리나라의 기회로 삼으려면?

- 조세제도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세계적인 합의안이 나온 상황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극적 대응과 협력국가 모색
- 합의안 등에 반대하는 나라의 입장도 확인 필요(때에 따라서는 협력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 140개국 중 합의안 받아들이지 않은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2018년 12월 4일 EU경제금융이사회(ECOFIN)에서는 DST 도입을 위한 논의에서 2018년 3월 제시된 EU집행위원회 안보다 완화된 '프랑스-독일 공동 중재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
- 조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확실한 방안 모색 필요
- 우리나라 세수입 확보만을 위한 주장이나 제도 변화가 아니라,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해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하면서도 세계적인 합의안을 따르면서 국내외 기업들에게 확실하고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하는 세제, 세정이 되길 희망
- 2021년 2월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 신설로도 부족. 세제도 투자한 만큼 좋은 제도가 나옴. 국가간 치열한 과세권 다툼에서 제도로써 우위에 서기 위한 적극적 투자 필요.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5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

1. 일반적 의견
○2. 세부 의견
○○3. 증세 방안
○

국회에산정책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토론

이 영

한양대학교

2021년 11월 1일

1 / 5

1. 일반적 의견
●2. 세부 의견
○○3. 증세 방안
○

총세수 규모에 대한 의견

-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향후 2022~2026년 사이 합계 7조 1,662 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세수 감소형 세법개정안**은 이미 확대된 또는 향후 증가 예상되는 의무지출을 위한 **재원 확충** 필요한 현실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안임.
 -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작된 확장적 재정 운용과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으로 이미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태임
 - 이미 확대된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의무지출**은 **재정수지 적자가 아닌 증세 또는 조세지출 축소**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중 세수 감축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인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는 지원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항목으로 보임
 - 조세지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형평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 (생산 및 연구개발의 양의 외부성; 투자재원 부족;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보면)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부 개입과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보이지 않음.

2 / 5

1. 일반적 의견 ○ 2. 세부 의견 ● 3. 증세 방안 ○

세부 의견

- ①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관련하여
 - 제안된 ISA 계좌 전면 비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단, 5,000만원의 공제액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2,000만원 정도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금융투자소득에 5,000만원과 같은 큰 규모의 공제액을 두는 것은 매년 연말 이득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부작용을 가질 것으로 우려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공제액을 오히려 작게 하고 ISA 계좌와 같은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기재에 결합하여야 함
- ②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세 형태의 '청년세' 신설은 바람직하지 못함.
 - 수혜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고 재정 운용에 경직성을 가져 올 것임
 -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일반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 ③ 세법의 기준 금액들은 자의적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물가연동제' 형태를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금액을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을 각각 200만원씩 일정액을 올리기 보다는 2,200만원, 3,300만원, 4,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3 / 5

1. 일반적 의견 ○ 2. 세부 의견 ○○ 3. 증세 방안 ●

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증세 방안

- 확대된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의무지출은 증세 또는 조세지출 축소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함
- 연대세 형태의 증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주요세목들을 동일율(예를 들어, 10%)로 증세
 - 이렇게 마련된 추가 세수를 복지 확대에 사용
 - 이러한 연대세 형태의 증세는 향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가 자동 증액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사회보험료중 기업 부담분을 높여서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들의 재정을 개선
 - 사회보험료 인상,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사회서비스(교육, 훈련, 돌봄, 주거, 의료) 확대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

5 / 5

1. 일반적 의견 ○ 2. 세부 의견 ● 3. 증세 방안 ○

세부 의견 - 계속

- ④ 2021년에도 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였는데, 세법개정안에 사용되는 경기 예측과 세수 추계를 보다 엄밀하게 그리고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 ⑤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은 재검토할 필요 (지원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
- ⑥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를 최소화하여야 함
- ⑦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는 용어보다는 '임차인 지원' 임대인과 같은 보다 뜻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4 / 5

MEMO

Lined area for writing on the left page.

MEMO

Lined area for writing on the right page.

MEMO

[illegible]

MEMO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발간일 2021년 11월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1
